

입법정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
- 2.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3
- 4. 섬 발전 촉진법 (개정).....3
-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4
-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
-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
- 8.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6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7

- 1.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8
- 2.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9
- 3.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10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1

- 1. 새마을회관 등 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 (경기 수원).....12
- 2.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 지원 관련 (경북교육청).....16
- 3.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민간인 위촉 관련 (전북 익산)···19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일부개정 `22. 11. 8. 시행 `22. 11. 8.]

소관부서 : 여성가족부(권익기반과), 02-2100-644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임직원 채용, 공무원 임용, 학위 취득 및 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인정되도록 명확히 하고,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2 [일부개정 `22. 11. 15. 시행 `22. 11. 15.]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8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특별자치시장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2. 11. 1. 시행 '22. 11. 1.]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운영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일반금전채무의 한도를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2. 11. 15. 시행 '22. 11. 15.]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대상섬으로 지정된 섬의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2. 10. 18. 시행 '22. 10. 18.]

소관부서 :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무통주사제 처방에 수반되는 치료재료대, 화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치료 및 견인치료 목적의 교정장치 등을 추가하고, 치아보철 비용의 지급한도를 높이는 등 요양급여의 지급기준을 개정·보완하는 한편,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 지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확인이 어려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 인적사항, 생활환경 등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11. 1. 시행 '22. 11. 1.]

소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 044-203-409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에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것으로 보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8. 23. 시행 '22. 11. 24.]

소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9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8 [일부개정 '22. 11. 15. 시행 '22. 11. 15.]

소관부서 :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 044-201-813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원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의결일 '22. 10. 19.]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제2조)
- 나. 적용 범위 및 대상 기관을 규정 (제3조~제4조)
-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7조)
- 라.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제10조)

2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결일 '22. 10. 18.]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

-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

나. 구성 (제4조)

- 단장 :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시 자원봉사센터장
- 단원 :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재해구호 지원기관의 직원

다. 실무팀의 편성 (제6조)

-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과전팀, 자원지원팀으로 편성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

- 지역대책본부장과 단장의 정보 공유 및 보고

3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의결일 '22. 10. 17.]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제3조)
- 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제4조)
- 라.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관리 (제5조~제6조)
- 마.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제7조~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 (제9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의견22-0272] 경기도 수원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수원시새마을회와 수원시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재향군인회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수원시새마을회, 그리고 사회공익 증진과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원시재향군인회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수원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원시새마을회 및 수원시재향군인회에 각 단체의 회관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서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의 회관(시설)의 개보수 비용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를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비의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제2조제2항에서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조직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설비를 운영경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 개보수비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단체의 성격, 수원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의견22-0256] 경상북도교육청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자치사무이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교육자치법 제20조제10호에서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나목에서는 ‘교육활동’에 ‘등·하교’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자치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장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권한을 침해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 제11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한정되지 않고,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 제11조의 규정취지가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교육감이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장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
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5조 관련]

[의견22-0262] 전라북도 익산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서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제1호)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제1항),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위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위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제1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의회의 합의제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의 선임이란 의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의회 위원회는 의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제1호), 예산의 심의·확정(제2호), 결산의 승인(제3호), 청원의 수리와 처리(제9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바,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표제 원리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 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국회법」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⑨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